

남원시 공고 제2012-982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1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공무원제안규정」 개정(2011.6.8)사항에 맞게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 처리기간 변경(안 제14조제1항)

- 채택심사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
- 공모제안의 경우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명시

나. 불채택제안 재심사 요청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 채택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다.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 포상규정 신설(안 제20조제6항)

- 제안 실시 및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

3. 의견 제출

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 ⑤ (생략)</p> <p><신설></p>	<p>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p>